

의안번호	2213484
의 퇴 인	이수진의원
회 답 일	2025.11.11.
추 계 번호	25C5570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협의회의 자문을 받을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6,200만원(연평균 3,24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필수유지의료행위(안 제59조의2)	50	—	—	—	—	50	10
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 (안 제59조의3)	112	—	—	—	—	112	22.4
합 계	162	—	—	—	—	162	32.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9조의2 (필수유지의료행위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유지의료행위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·운영 수준,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기준(이하 “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”)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59조의3 (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함에 있어 환자, 의료인 등의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)를 둠(제1항)	의무규정

2	안 제59조의3 (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)	○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함(제2항) 1. 제28조에 따른 의료인단체, 「간호법」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양회,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공의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.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. 보건복지부 등에 등록된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. 노동계,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, 소비자단체(「소비자기본법」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하는 자 5.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6.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○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9조의2 (필수유지의료행위)	○	○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2	안 제59조의3 (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)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 마련과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을 산출함
 - 각 조문별로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 - 본 추계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므로, 유지기준의 세부내용,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, 횟수 등의 변경 시에는 추가재정소요도 달라질 수 있음
- 추계 첫 해에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마련하고,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회의(이하 “운영협의회”) 자문을 받는 것으로 가정
 - 개정안에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의 개정 주거나 운영협회의 개최 주기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, 유지기준을 마련하는 첫 해에 운영협회의 자문을 받고 이후에는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필수유지의료행위(안 제59조의2)
 - 개정안에 따른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가정하며, 추계 첫해인 2027년에 연구용역비 5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 -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유사사례(가이드라인 마련, 기준 수립 등) 연구용역비의 평균 계약 금액인 5,000만원을 준용함

[표 2]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목록

구분	연구명	계약 연도	계약 금액
1	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3차 마련 연구	2024	3,000만원
2	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·실시 기준 및 관리방안 수립 연구	2024	7,000만원
3	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마련	2023	5,000만원
4	새로운 지불 모델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 (혁신계정)	2023	4,950만원
5	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에 적합한 안전성·유효성과 제조 및 품질 자료 제출 기준 수립 연구	2023	7,000만원

자료: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

[표 3]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 마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필수유지의료행위 (안 제59조의2)	50	-	-	-	-	50	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(안 제59조의3)

-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는 개정안에 따라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추계 첫 해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보건복지부 유사 사례의 개최 현황을 적용하여 추계
 -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준용하여,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 자문을 위해 추계 첫해에 연 2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¹⁾
 -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2022년 8월 학계, 연구기관, 정부부처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“재정추계 전문위원회”를 발족하고 2023년 4월까지 총 22회의 회의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구성함

1) 개정안은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사항을 자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, 대다수 보건복지부 산하의 심의·의결 기능을 하는 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준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

- 추가재정소요는 운영협의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 수당을 추계하며, 이외의 운영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- 추가재정소요는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는 추계 첫해(2027년)에만 발생하며, 민간위원 수에 참석 수당 단가 및 연간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
 - (위원 정수)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은 개정안에 따라 17인으로 가정²⁾
 - (회의 횟수) 연 2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 - (참석 수당 단가) 기획재정부의 「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³⁾ 및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을 준용하여 30만원으로 하고,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 결과, 추계 첫 해인 2027년에만 1억 1,200만원 발생

[표 4]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 (안 제59조의3)	112	-	-	-	-	112	22.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2)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,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두도록 함. 총 25인 정원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공무원이 소속된 점을 고려하여 운영협의회에도 총 3인의 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

3) 기획재정부의 「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에 따르면,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,000원을 지급하되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.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비, 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, 회의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,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